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선박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컨테이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형식승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선박안전법」 개정(법률 제19134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권한을 위임해야 할 사항과 과태료의 부과대상별 기준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새로 도입된 업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안 제21조)

선박용 물건·컨테이너 형식승인의 지위승계, 형식승인 품질 제고를 위한 성능검사,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및 안전점검사업자 등록 등 「선박안전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업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기존 업무권한 위임의 미비사항을 정비함

나. 개정된 과태료 부과대상별로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2)

선박용물건 등 형식승인증서 갱신신청,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변경 승인 및 안전점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을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컨테이너형식승인과 그 변경승인 및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갱신”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3. 법 제18조제1항·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갱신

3의2. 법 제18조의2제2항 및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4의2. 법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검사 및 그에 따른 조치

7의2.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7의3. 법 제23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컨테이너 성능검사 및 그에 따른 조치

7의4.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승

인·재검토 및 변경승인과 법 제24조의3에 따른 승인취소

7의5. 법 제24조의2제1항·3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변경등록 및 지도·감독과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취소 및 정지처분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위반	위반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경우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50만원 외에 매 1일 초과 시마다	법 제89조 제2항제1호		150 1	
나.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2호	150	250	500
다.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소형선박은 제외한다) 안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3호의2	150	250	5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제2항제3호의3	250	350	500
마. 법 제18조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또는 변경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4호	150	250	500
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제2항제4호의2	250	350	500
사.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제2항제4호의3	250	350	500
아.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7호	200	350	500
자.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3항	40	70	100
차.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8호	200	350	500
카.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항해용 간	법 제89조	150	250	500

행물을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제2항제9호			
타.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타실의 시야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10호	150	250	500
파.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타실과 조타기(操舵機)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 통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11호	150	250	500
하.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12호	150	250	500
거. 법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13호	150	250	500
너.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의 서류를 선내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14호	150	250	500
더.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화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15호	150	250	500
러.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機器) 및 이에 관한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16호	150	250	500
머.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17호	150	250	500
버.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19호	150	250	500
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의 복원성·화물의 성질 및 적재(積載)방법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21호	150	250	500
어.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22호	150	250	500

저.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적재·운송 또는 저장한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23호	150	250	500
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24호	200	350	500
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24호의2	150	250	500
터.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25호	200	350	500
퍼.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예인선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26호	150	250	500
허. 대한민국 선박의 소유자가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된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27호	200	350	500
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28호	150	250	500

비고

가목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과태료 금액의 상한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 부 장관은 법 제81조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 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 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에게 위임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①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그 변경승 인</u> <u><신 설></u>	3. <u>법 제18조제1항 ·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 · 변경 승인 및 갱신</u> 3의2. <u>법 제18조의2제2항 및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u>
4. (생 략) <u><신 설></u>	4. (현행과 같음) 4의2. <u>법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검사 및 그에 따른 조치</u>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7. <u>법 제23조제1항 ·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 인과 그 변경승인 및 컨테이 너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u>	7. ----- ----- <u>형식승인 · 변경 승인 및 갱신</u>

<u>처분</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8. 법 제25조제3항부터 <u>제5항</u>까지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에 필요한 조치, 비용청구 및 비용충당 8의2. ~ 17. (생 략)	<u>7의2.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u> <u>7의3. 법 제23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컨테이너 성능검사 및 그에 따른 조치</u> <u>7의4.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 방법의 승인·재검토 및 변경승인과 법 제24조의3에 따른 승인취소</u> <u>7의5. 법 제24조의2제1항·3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변경등록 및 지도·감독과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취소 및 정지처분</u> 8. ----- <u>제6항</u>----- ----- ----- ----- 8의2. ~ 17.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연 락 처	(044) 200 - 5836